직제규정

제정 2009. 05. 27.
개정 2009. 12. 18.
개정 2011. 01. 06.
개정 2012. 01. 05.
개정 2012. 05. 03.
개정 2013. 02. 07.
개정 2013. 11. 18.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02. 27.
개정 2015. 02. 26.
개정 2015. 12. 21.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02. 27.
개정 2018. 01. 31.
개정 2018. 04. 18.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08. 06.
개정 2019. 09. 09.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03. 10.
개정 2020. 12. 24.
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9.
개정 2022. 12. 26.
개정 2023. 04. 07.
개정 2024. 01. 2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원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 ① 진흥원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원장 직속의 부설기구와 상임감사 직속의 감사실을 두며, 부원장 및 부설기구의 산하에 조직을 편제한다. <개정 2012.5.3.> <개정 2013.11.18.> <개정 2015.2.26.> <개정 2015.12.21.> <개정 2016.12.29.> <개정 2017.2.27.> <개정 2018.1.31.> <개정 2018.4.18.> <개정 2019.8.6.> <개정 2019.9.9.> <개정 2020.12.24.> <개정 2021.6.9.>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 전체 조직의 편제는 1부설기구(센터), 1부문, 6본부, 2센터, 1실이며, 부문 조직으로 글로벌혁신부문, 본부 조직으로 경영전략본부, 콘텐츠수출본부, 방송영상본부, 게임・신기술본부, 콘텐츠IP진흥본부, 콘텐츠기반본부, 센터 조직으로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공정상생센터를 둔다. <개정 2011.1.6.> <개정 2012.5.3.> <개정 2013.11.18.> <개정 2015.2.26.> <개정 2015.12.21.> <개정 2016.12.29.> <개정 2018.1.31.> <개정 2018.12.28.> <개정 2019.8.6.> <개정 2019.9.9.> <개정 2020.3.10.> <개정 2021.6.9.> <개정 2021.12.29.> <개정 2022.12.26.> <개정 2024.01.24.>

③ 원장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 팀,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2.12.26.> <개정 2024.01.24.>

④ 진흥원은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 부설기관 혹은 지부 등을 둘 수 있다.

⑤ 정관 제4조 4호 및 본 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를 부설기구로 두며, 부설기구의 장이 관장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1.6.9.> <개정 2021.12.29.>

⑥ 해외사무소, 부설기관 혹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21.> <조항이동/개정 2020.12.24.>

제4조(기구 및 정원) ① 진흥원의 기구 및 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18.> <개정 2015.2.26.>

② 부서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 기구 및 정원의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3.>

제 2 장 보직 등

제5조(부원장) 부원장의 직무는 상임이사가 담당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지휘한다.

제6조(본부·센터장) ① 본부·센터에는 본부·센터장을 두며, 본부장 및 센터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6.> <개정 2014.2.27.> <개정 2015.2.26.> <개정 2015.12.21.> <개정 2021.6.9.> <개정 2021.12.29.> <개정 2022.12.26.>

② <조항 삭제 2011.1.6.>

[제목개정 2022.12.26.]

제7조(감사실) ① 상임감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실장을 둔다. <개정 2014.2.27.> <개정 2018.4.18.> <개정 2019.9.9.> <개정 2021.6.9.>

② <삭제 2019.9.9.>

제8조(보임) ① 부서장이라 함은 팀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2.26.> <개정 2021.6.9.>

② 제1항의 각 부서장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서장은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소관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진흥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직무대행) ① 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6.> <개정 2012.5.3.> <개정 2019.9.9.>

② 부원장 및 부서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직제 순에 따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2.5.3.> <개정 2015.2.26.> <개정 2019.9.9.>

제 3 장 업무 분장 등

제11조(업무분장)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정원외 근로자) ①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에 계약제 근로자 등을 고용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5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별표 1> 기구표는 2017년 정기인사 발령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정원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기구표는 2019년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정원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8.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9.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설기관 관련 조항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와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진흥원 규정 및 내규에서의 부서명 및 직명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와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진흥원 규정 및 내규에서의 부서명 및 직명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3년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와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진흥원 규정 및 내규에서의 부서명 및 직명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3.4.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4년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내규와의 관계) 이 규정의 <별표 1> 기구표 시행과 동시에 진흥원 규정 및 내규에서의 부서명 및 직명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구표 <개정 2013.11.18.> <개정 2015.2.26.> <개정 2015.12.21.> <개정 2016.12.29.> <개정 2017.2.27.> <개정 2018.1.31.> <개정 2018.4.18.> <개정 2018.12.28.> <개정 2019.8.6.> <개정 2019.9.9.> <개정 2020.3.10.> <개정 2020.12.24.> <개정 2021.6.9.> <개정 2021.12.29.> <개정 2022.12.26.> <개정 2024.01.24.>

1부문, 6본부, 2센터, 1실 / 1 부설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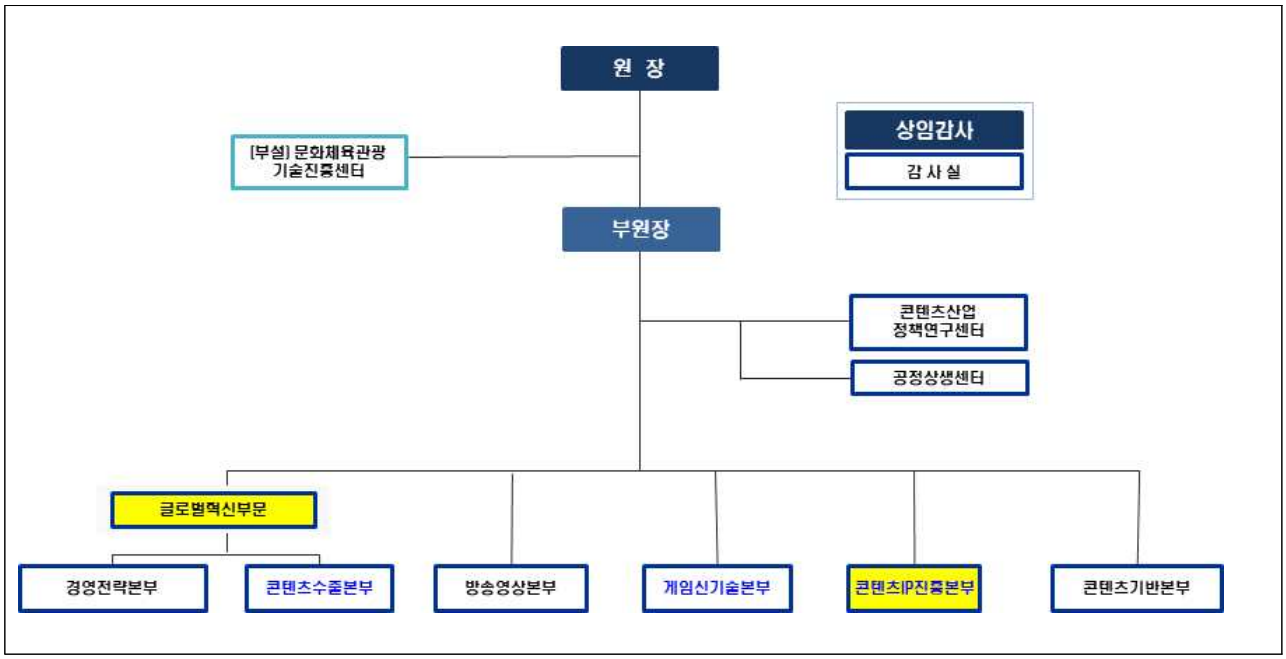

〈별표 2〉 정원표 <개정 2013.2.7.> <개정 2013.12.31.> <개정 2015.2.26.> <개정 2015.12.21.> <개정 2016.12.29.> <개정 2018.12.28.> <개정 2019.9.9.> <개정 2019.12.30.> <개정 2020.12.24.> <개정 2021.6.9.> <개정 2021.12.29.> <개정 2023.4.7.> <개정 2024.01.24.>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직원
총계	524	3	521
계	276	3	273
원장	1	1	-
상임감사	1	1	-
상임이사	1	1	-
G1*(부장급)	23	-	23
G2(차장급)	58	-	58
G3(과장급)	75	-	75
G4a(대리급) G4b(주임급)	117	-	117
무기계약직	248	-	248

* Grade 1